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21.(화) 17:00
(지면) 2026. 4. 22.(수) 조간

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

- 2026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 위임사항, 재산세 부과(7, 9월) 대비 기준 마련
-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 개선, 재산세 부과 준비,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등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을 4월 22일(수)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(7월, 9월)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지방세환급금 지급방법 확대)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,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.
 -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(페이머니*)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.
 - *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.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·출금, 전자결제 가능
 - (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)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(공시가격×공정시장가액비율)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%~45%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여,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.
 - ※ 다주택 및 법인은 60% 적용
 - (지방 소재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차등화)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.

- 수도권은 현행 60㎡ 이하를 유지하되,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(경기 연천·가평, 인천 옹진·강화)은 85㎡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.
- (농수산물 유통시설 재산세 분리과세)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.
- (에너지 공급용 및 공항시설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)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,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.
- (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)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.
- 「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」은 4월 22일(수)부터 5월 15일(금)까지 2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,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(월)부터 시행된다.
-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(opinion.lawmaking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우편이나 팩스,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,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선 (044-205-3802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혁 (044-205-3821)
	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	책임자	과 장	서은주 (044-205-3831)
		담당자	사무관	채가람 (044-205-3832)

1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

제목	조문	주요내용	비고
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	영 제39조, 규칙 제18조	○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*에 선불전자지급수단(페이머니) 추가 * (현행) 현금, 계좌입금 → (개선) 현금, 계좌입금 + 선불전자지급수단(페이머니)	제도개선 납세자 편의 제고
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	영 제74조, 규칙 제49조	○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- 정보 범위: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, 피부양자 정보 등 - 정보 제공 시기: 매일	제도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
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	영 제74조, 규칙 제47조 등	○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(26.7.1. 시행)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·연계하는 근거 마련	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

2 지방세법 하위법령

제목	조문	주요내용	비고
① 지방소재 법인 사원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	취득세 영 제28조의 2	○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※ (현행) (모든 지역) 60㎡ 이하 주택 (개선) 수도권 60㎡ 이하 / 비수도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㎡ 이하	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
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	주민세 영 제78조	○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* 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* 건축물은 연면적,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	제도개선 과세 명확성 제고

제목	조문	주요내용	비고
③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식 정비	주민세 규칙 제37조, 별지 제37호	○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개정 사항*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* 과세제외 면적: (현행) 직장어린이집, 기숙사, 폐기물 처리시설 등) + (추가)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	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
④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	재산세 영 제102조	○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('26년 ~ '28년)	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
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	재산세 영 제102조	○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('26년 ~ '28년) ※ 유사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('26~'28년, 3년)	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
⑥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	재산세 영 제102조	○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('26년 ~ '28년) ※ 유사 시설인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토지 등도 같은 일몰기한 설정('26~'28년)	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
⑦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	재산세 영 제109조	○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%,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%, 6억원 초과 45%로 설정	제도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
⑧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	지역자원시설세 영 제136조	○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('26.7월~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-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,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 및 재난 폐기물인 경우 제외	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